

먼저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同 改正條例案은 새로운 행정수요가 유발되는 분야의 인력을 보강하고 過積車輛團束 등의 업무가 自治區에서 市로 이관됨에 따른 管理人力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國家職의 地方公務員 전환 47名, 新廳舍建立推進要員 20名, 監察班要員 10名, 資源回收施設運營人力 10名, 綠化推進 및 施設計劃推進人力 6名 등을 증원하고, 交通사회문제연구원 1名을 감축함으로써 本廳 定員 92名을 보강하고, 消防學校 應急處置 敎官要員 1名을 증원하고, 過積車輛團束業務가 自治區로부터 市로 이관됨에 따른 管理人力 158名 등 事業所 정원 159名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조정된 정원 총수는 本廳이 2,465名, 直屬機關이 5,162名, 事業所가 9,807名 등으로 總 288名이 증원되나 國家職公務員 47名의 감축과 自治區 過積車輛團束人力 등 定員 194名이 감축되어 실제로는 47名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이를 면밀히 심사한 결과, 新廳舍建立 推進과 資源回收施設의 建設 運營 등 行政需要가 증대되는 부분의 인력 보강은 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監察班要員 10名에 대하여는 업무성격과 업무량을 파악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監察班要員 10名을 제외한 修正案을 可決하였습니다.

다음은 '96年度市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의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同 變更計劃案에 計上된 財産은 賣却 1件으로 瑞草區 方背洞 1030-3에 소재한 市有地 198坪을 方背聯立再建築組合에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同 件은 지난 13回 定期會 때 95年度 市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에 賣却對象으로 上程되었으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賣却對象에서 제외되었던 財産입니다.

住宅建設促進法 第24條第1項에 의거 事業施行者인 住宅組合에 타에 우선하여 賣却할 수 있고 또한 同 土地를 賣却하지 않을 경우에 組合의 再建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執行部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原案 可決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審査報告書를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同僚議員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審査報告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文一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修正하여 審査報告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과 '96市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을 一括 議決하고자 합니다.

議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異議 없으시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대로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수정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중 “2,465명”을 “2,455명”으로 수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제1호 증원 정원중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47명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2,373명”을 “2,455명”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5,161명”을 “5,162명”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9,612명”을 “9,807명”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제1호 증원 정원중 지방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47명에 대하여는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시유재산인 토지 656.4㎡를 주택 건설촉진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방배연립재건축 조합에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96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한다.

□관리계획 변경계획 계상재산  
○처분 1건 토지 1필지 656.4㎡(198.6평)

시 유 재 산 관 리 계 획  
( '96관리계획 변경계획 총괄표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건수	수 량	금 액		
취 득 부 분	계	토지	4	339,526.9	21,000,000			4	339,526.9	21,000,000	
		건물	18	70,261.9	90,446,620			18	70,261.9	90,446,620	
		기타									
	1.매입	토지	4	339,526.9	21,000,000			4	339,526.9	21,000,000	
		건물									
		기타									
	2.교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18	70,261.9	90,446,602			18	70,261.9	90,446,620	
		기타									
처 분	계	토지				1	656.4	944,640	1	656.4	944,640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1	656.4	944,640	1	656.4	944,640
5.양여	토지										
	건물										
6.교환 처분	토지										
	건물										

(※賣却對象 財産目錄 收錄省略)

○議長 文一權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 오늘로서 第83回 臨時會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會期 中에는 3日間의 서울市政 및 教育行政에 관한 質問을 통하여서 市政 전반을 폭넓게 재조명하면서 市民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市政이 行政需要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討論하는 등 성과 있는 會期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짧은 常任委員會 活動期間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장을 직접 시찰하여 市民의 의